

전파방송 주간동향 (제 590호)



2017. 1. 16.(월)

- 목 차 -

◇ 해외 전파방송 동향	1
○ 프랑스	
- ARCEP, “지역, 기업, 5G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공개 상담 개시 ...	1
○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내 FM 라디오 전환(switch-off)	2
○ 스웨덴	
- 스웨덴, 2.3GHz 대역 경매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	4
○ 미 국	
- 미 연방항소법원, 앱스토어 독점 혐의로 애플 소송 재개	6

지역분류	미주 / 미국
보도일/기관명	2017. 1. 12.(목) / ZDNet
제 목	미 연방항소법원, 앱스토어 독점 혐의로 애플 소송 재개
출처(URL)	http://www.zdnet.com/article/us-appeals-court-reopens-lawsuit-against-apple-for-alleged-app-store-monopoly/

【 개 요 】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 아이폰 고객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Cupertino의 아이폰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하기로 판결함

【 주요내용 】

- 2011년 말, 아이폰 사용자들(원고) 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애플의 주장에 따라 반독점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함
 - iOS 사용자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없으므로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수 있고, 30%가 넘는 판매수수료를 요구, 가격 인상과 함께 시장의 경쟁을 차단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1심에서는 원고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기각함
- William A. Fletcher 담당 판사는 12일에 제기된 판결에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으로, 원고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애플에서 구매했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언급 했으며,
 - 애플은 “ 앱스토어는 물리적인 공간을 각 점포에 임대하는 쇼핑몰과 비슷하다. 즉, 앱스토어가 쇼핑몰일 경우, 앱 제작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점과 같다”라고 주장함
 - 이에 Fletcher 판사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의 써드파티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스토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 앱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함
- 원고 소송 대리인 Mark Rifkin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이 성공하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은 애플 판매 수수료 30% 중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밝힘
 - 또한 “반독점 소송 법조항에는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함

↑ 목차로 이동

내용상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종실 대리(317-6148, pjs1226@rapa.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